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5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또,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

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국고로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장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보장 책임에 따른 장기적인 국고재원 마련 방안 등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복무한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그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주된 비

용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단기간 내 증대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출산 장려의 정책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가부채 규모와 국가신인

도 평가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문화 되더라도 곧바로 국가 충당부채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존재 하는 이상 국민연금급여는 지급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가가 국민 연금급여에 드는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추 가적인 연금개혁의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 측 검토의견과 관 련하여 해당 조문의 취지와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을 초과하는 특수한 상황 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게 되면 향후 국민연금기금 고 갈 후 당해연도 세수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점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부과방식·부분적 립방식 등 국가별 공적연금 운영방식의 차이와 약 1,170조원의 국민연 금기금 적립금이 야기할 수 있는 ‘착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국가의 책임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전 체’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 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해외사례와 시나리오 별 재정부담의 총량 비교결과 등을 참고하여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 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역병

의 봉급 인상속도를 고려하여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장성 강화논의를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해외사례와 시나리오별 재정부담의 총량 비교결과 등을 참고하여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출산크레딧 수혜자의 성별 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장성 강화논의를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